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안)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발주기관”이라 칭한다)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업체인 ○○○○(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한다)간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과 준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계약의 규정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한 대행구역내의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기타쓰레기(불연성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대행구역)** ① “계약상대자”가 대행할 청소구역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별표 1]로 위탁한 성북구 지역 내의 지정구역에 한한다.

② 다만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대행구역과 대행업체를 조정할 경우 대행계약 기간 내에도 청소구역의 일부 변경 및 전면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대행업체의 지원의무 등)** “계약상대자”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지정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타 대행업체로 하여금 “발주기관”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대행계약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발주기관”의 대행구역 재조정이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존의 대행계약서는 본 계약의 시행 도래일로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제6조(청소인력 및 장비확보)**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 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기준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별도의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대·폐차, 감·증차 등 차량 및 장비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에게 사전협의 또는 보고하여야 하며, 즉시 변경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내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내의 생활폐기물을 주 3회(일) 이상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대행구역 간선도로상의 생활폐기물은 매일 수거하여야 한다.
- ③ 성북구 관내 거주지 변경(이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규격봉투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량 수거하도록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내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함에 있어 수거일자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행구역 축소 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① “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내의 모든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과 처리시설까지의 운송을 책임진다. 단, 감량의무사업장 등 자체 감량화 및 처리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시간대에 수거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 또는 처리시설까지 수거·운송하고, 처리비(이물질 처리비 포함)는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혼합수거 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 및 운반을 위하여 별도의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수거 및 운반과정에서 오수나 침출수가 도로상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과 수거에 있어 “발주기관”이 **시범사업을 포함한 본사업을**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⑥ 음식물류폐기물 운송량 계량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시설에서 계량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재활용품 수집·운반)** ① “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내의 일반주택, 공동주택, 사업장 등(단, 재활용품을 자체 처리하는 공동주택, 사업장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모든 재활용품을 주 3회(일) 이상(제7조 제2항 규정의 수거일자와 동일한 일자에), 간선도로상 배출된 재활용품은 매일 수거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반입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하는 재활용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1]에서 규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말하며, 향후 “발주기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도 이에 해당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수집된 재활용품을 운반할 때, 적재한 재활용품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그물망 등으로 덮은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수거한 후 남아있는 잔재쓰레기도 전량 수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기타쓰레기의 수집·운반)** ① “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내 공사장 생활폐기물(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과 기타쓰레기(불연성 생활폐기물 등)를 수거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 ② 수거한 폐기물은 재분류 및 상차작업이 용이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제11조(적환장)** ① “계약상대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적환장을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적환장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폐·방진시설을 하여야 하며,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독과 물청소 및 탈취작업 등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적환장의 이전 또는 개선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한 내에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적환장내 음식물류폐기물의 보관에 따른 악취발생 등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 외 ○필지 상의 성북구 생활폐기물 적환장(○○적환장)을 대행계약기간동안 공동으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이 종료된 경우 시설물 원상복구 후 사용권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차고 및 사업소의 소재지)** “계약상대자”는 차고 및 사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제14조(영업의 정지·반입정지 등 사유발생시 대행방법 및 비용부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관리하는 구역의 폐기물을 즉시 수집·운반하거나 다른 업체로 하여금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를 당하였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반입정지를 당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대행구역에서 미수거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4. “계약상대자”가 미수거 하였을 경우

**제15조(수집·운반 수수료 등)**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등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르며, 동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한다.

②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 등은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③ 재활용품 수집·운반 수수료는 매월 세대 및 사업체당 1,150원으로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익월 10일까지 지급한다.

1. 세대수는 2014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단, 재활용품을 자체 처리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제외).

2. 사업체수는 최근 실시한 사업체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단, 주택세대와 중복되는 개인택시, 개별화물·용달, 부동산 임대업 등 개인사업자와 1일 평균 300kg 이상 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제외).

④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기타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는 제1항에 의하며, “발주기관”은 폐기물처리 제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익월 10일까지 지급한다.

**제16조(종량제 수수료 감면 처리)** ① 대행구역의 공공용봉투 및 감면대상자용 규격봉투는 “발주기관”이 관할동장에게 공급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집·운반 하되 “발주기관”이 수집·운반수수료를 부담한다.

② 전항에 사용하는 규격봉투는 생활폐기물 가정용 1l, 2l, 3l, 5l, 10l, 20l 등 6종이며, 공공용 규격봉투는 10l, 20l, 30l, 50l, 100l 등 5종으로 한정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의 수불사항을 매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17조(폐기물처리 제비용)** ① “발주기관”은 규격봉투를 제작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며,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규격봉투의 반입수수료 등을 “발주기관”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규격봉투의 반입수수료 등은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금액을 결정하여 부과한다.

**제18조(종사원의 신분 및 후생복지)**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종사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에게 “발주기관”의 소속 종사원 임금수준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계약상대자”는 기 제출한 소속 종사원 후생복지 향상 계획에 따라 종업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근로조건 이행확약서)**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체결한 대행사업을 포괄적으로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약약 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임금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재무회계의 객관성 확보)** ① “계약상대자”는 재무회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결산보고서(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대행업체 회계감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책임의 한계 및 신의성실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운반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② “계약상대자”는 청소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익사업임을 깊이 명심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가지고 대행구역의 주민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내의 청소 전반에 관한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종사원이 주민에게 기타 비용을 요구하거나 수거기피, 차등수거, 불친절행위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의 모든 종사원에게 성북구 청소행정서비스헌장을 주지시키고 청소 서비스 이행표준을 실천하여야 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 및 본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건당 10만원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22조(지도·감독)**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대행구역내의 청소 전반에 대하여 필요시 정기·수시, 점검·지도 등을 통한 감독과 지시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 ② “발주기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 관할 동장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소속 환경미화원, 운전원의 비위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시 “계약상대자”에게 종사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비위 종사원에 대하여는 근무규정에 의한 조치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보고와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대행지역내의 청소관련 특이사항이 발생된 때, 관할 동장 및 “발주기관”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내의 쓰레기 무단투기 및 종량제 위반사항에 대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계도 또는 홍보하여야 하며, 관할 동장에게 보고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대행구역내의 청소 취약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특별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지 않도록 순찰차량을 확보하고 순찰팀을 편성하고 순찰을 실시하여 대행구역 간·지선 도로상의 규격봉투 수거와 민원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대행지역에 대한 청소일정 및 횡수를 정한 이행계획서를 차기대행계약 개시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계획 변경시 시행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계약상대자”는 당월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등을 “발주기관”이 정한 서식에 의거 익월 10일까지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4조(계약의 해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관련법을 위반한 때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기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3. “계약상대자”의 대행청소 능력이 현저하게 없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평가하거나, 대행지역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동장으로부터 계약해지의 요구가 있을 때
  4.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신청이 있고 “발주기관”이 이를 수용한 때
  5.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행위 또는 행위과실로 “발주기관”의 손해가 중대히 발생된 때
  6. “계약상대자”가 민원야기와 행정지시를 미이행한 때는 “발주기관”은 경고조치를 하며, 분기내 경고 3회 또는 계약기간 내 경고 10회 이상인 경우 대행구역을 변경 또는 축소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제15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
  8. 제21조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일·정시수거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기타 관계법규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이 폐기물 수집·운반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의 해지가 필요한 때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발주기관”이 구역청소 인수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전에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청소책임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제15조, 제17조의 폐기물처리비 및 제 수수료, 제 비용 강제이행과 파업, 파산 등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이 전년도에 판매한 규격봉투 판매금액(판매이윤을 제외한다)의 1/3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을 청소책임 예치보증금으로 “발주기관”에게 현금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한 이행보증 보험증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보증보험은 “발주기관”을 피보험자로 하고, 가입기간은 본 계약기간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청소예치보증금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대집행하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파업·반입정지 등으로 대행구역내의 폐기물 수집·운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 경비(기 부과 체납액포함)
  2. “계약상대자”가 파산한 경우
  3. 법 제27조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발주기관”은 제1항의 채권확보액의 한도내에서 봉투를 공급하며, “계약상대자”가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1조의 의무를 해태, 지연, 기피로 인하여 “발주기관” 또는 제3자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5. “발주기관”이 제17조의 반입수수료 등 폐기물처리 제비용과 제15조 [별표 2] 음식물폐기물 반입수수료 체납액을 3회 이상 독촉 후에도 납부되지 않을 경우

**제26조(보칙)**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며 “계약상대자”는 [별표 3]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준수지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서 내용 해석의 문제발생시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③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④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한 후 각 1통씩을 보관한다.

2014. 12. .

위 계약자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계약상대자” (주)0000 대표 000